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내규 시행세칙

2023. 12. 12.

본 시행세칙은 대학원 학칙 및 제반 내규, 부동산학과 내규의 세부내용을 정하여 대학원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위한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강신청

-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과목을 정한다.
- 1차 학기 및 2차 학기는 전임교원 과목을 2과목 이상 수강한다. 다만, 2004년 1학기 이후 입학한 박사과정 원생은 부동산계량분석론 (I 및 II)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단,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대학이나 다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계량분석 관련 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학부나 석사과정에서 명칭이 같은 과목 혹은 유사과목을 이미 이수한 경우(계량분석론 I의 경우는 확률분포와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을 포함해야 하며, 계량분석론 II의 경우는 시계열분석 혹은 계량경제론을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에 한함)는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수강의무를 면제토록 할 수 있다.
- **2024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입학생부터는 “부동산 계량 분석 세미나”를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외국대학과 학생교류 협정에 따른 학점은 학기당 9학점까지 2개 학기 이내에서 석사학위과정 12학점, 박사학위과정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대학원규정 제18조2 ③항)
- 외국대학과 학생교류 협정에 따른 학점은 학기당 9학점까지 2개 학기 이내에서 석사학위과정 12학점, 박사학위과정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대학원규정 제18조2 ③항)
- 석사과정 학생은 총 24학점 중 자과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동일계열의 타 학과 관련 과목 수강 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박사과정 학생은 총 36학점 중 자과과목을 27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동일계열의 타 학과 관련 과목 수강 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논문지도교수가 선정되기 이전의 제반 학습지도는 주임교수가 대신한다.

2. 논문지도교수 선정

- 석사 및 박사 과정 입학생은 첫 학기, 늦어도 두 학기가 경과하기 이전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며, 논문지도교수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대학원주임교수가 연구지도 및 학사관리를 한다.
- 주임교수는 논문지도교수 선정을 위해 학생들의 희망을 복수로 신청받아 배정한다. 이때, 과도한 집중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학생 및 해당 교수의 양해를 얻어 제2희망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3. 자격시험

<종합시험>

- 석사과정 :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과 능력을 시험한다. 전공학점 24학점 중 15학점 이상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본인이 취득한 교과목 중 3과목 이상 합격한 경우 전체교수 회의의 결정에 따라 통과여부를 정한다.
- 박사과정 :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평가한다. 전공학점 36학점 중 24학점 이상 이수하고, 계량분석 I·II 또는 그 대체과목을 B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본인이 취득한 교과목 중 4과목 이상 합격한 경우 전체교수 회의의 결정에 따라 통과여부를 정한다.
- 과목의 선택은 논문지도교수와 협의 후 선택한다. 단, 부동산대학원에서 수강한 과목은 종합시험과목으로 선택할 수 없다. 박사과정의 경우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위 과목 이외의 기타 수강과목을 종합시험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
- 종합시험 문제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구분하여 출제할 수 있다.
- 시험과목은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과목 내에서 정한다.
- 교수님 한 분당 한 과목만 인정한다.
 - 예를들어 A교수님의 강좌 중 a, b 과목을 모두 수강했어도, 한 과목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중복 응시할 경우, 한 과목만 합격으로 인정)
 - 단, 전임교수의 강의를 다른 교강사가 강의한 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종합시험과목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 종합시험 합격 기준은 70점으로 한다.

<영어시험>

- 토익 800점 이상 면제
- 포탈에서 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 후 대체 할 성적표 행정실에 제출

4. 석사과정의 공개세미나(Proposal)

- 석사과정 원생은 3학기 재학 이후 학위논문에 대한 공개세미나(이하 Proposal)를 개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에 대한 Proposal은 논문심사를 신청하는 학기 개강 전에 개최한다.
- 단, 석사과정 학위논문 대체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원생의 등재지 논문 게재 시점이 석사 Proposal 이전이면 Proposal을 면제한다.

5.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공개세미나(Proposal)

-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원생은 상당히 진척된 학위논문에 대한 공개세미나(이하 Proposal)를 개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박사과정 학위논문에 대한 Proposal은 논문심사를 신청하는 학기 개강 전에 개최한다. (매년 2월과 8월)
-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원생은 전체 성적평점이 3.0/4.5 이상이어야 Proposal을 신청할 수 있다.
-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원생은 자격시험 합격(또는 면제)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예정)해야 Proposal을 신청할 수 있다.
- 박사과정 원생은 Proposal 신청시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투고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게재예정 포함)하고, 학과의 춘/추계 학술세미나 또는 KCI 등재 및 등재 후보학술지를 발간하는 부동산관련학회에서 1회 이상의 발표실적이 있어야 학위논문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논문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교수회의를 통하여 학위논문의 청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수업연한(박사과정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최소 6학기)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원하는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원생이 있는 경우 Proposal 이전에 주임교수가 학과 전임교원 5인의 소위원회회를 구성하여 Proposal 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 Proposal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다시 Proposal을 시도하여 통과한 경우에만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지도교수는 박사논문 제출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Proposal 통과여부를 주임교수에게 통보한다.

6. 박사과정 원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 주임교수는 매학기 교수회의를 소집하여 박사과정 원생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
- 주임교수는 평가결과 성취도가 만족스럽지 않은 당사자를 면담하여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 2학기 연속하여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원생은 박사과정 수학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7. 박사과정 원생의 외부출강

- 박사과정 재학생이 대학원 및 대학의 정규강의 설강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단, 현직 전임교원인 경우는 제외함)
- 논문지도교수는 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학위과정 이행단계 등을 검토하여 출강을 제한할 수 있다.

8. 석박사통합과정의 면접

- 석박사통합과정 신입학 지원자는 박사과정에 준하는 면접심사를 받아야 한다.
- 석사과정 중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화하고자 하는 원생은 전환 신청 이전에 박사과정에 준하는 학과 자체의 면접심사를 받아야 한다.

9. 복수학위 등 학교추천 대상자 선발

- 목적 : 대학원생의 학교추천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학습을 장려하고 대상자 선발 기준 등을 규정한다.
- 용어의 정의
 - 복수학위 등이란, 석사학위 과정간의 복수학위 및 교환학생, 박사과정 학생의 교환학생 및 연수 프로그램(이하 교환학생 등)과 관련하여 학교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이 중 특히 복수학위 및 교환학생 등을 통칭하여 유학이라 한다.

- 대상자란 유학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석사과정의 경우 2학기 이상 수료 예정인 재학생 및 휴학생을 의미하며, 박사과정의 교환학생 등은 4학기 이상 수료예정이며 종합시험을 통과한 재학생 및 휴학생을 뜻하고, 국제 학회 Doctoral Session의 경우는 논문 프로포절을 통과한 자를 말한다.
- 학교추천이란 협정 상 학교의 추천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유학관련 추천 신청 자격
 - 석사과정의 경우 토플 iBT 85점, GMAT 650 및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 평점 3.3/4.5 이상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득한 자와 지도교수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박사과정 교환학생 등의 경우엔 토플 iBT 80점 이상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득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구비 서류 : 유학의 경우 신청서, 관련 성적 증명서, 지도교수의 추천서, 학업계획서, 재정증명서 및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시기 및 처리기한 : 가을학기 유학의 경우 12월 1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해 심사하며, 사정위원회는 익년 1월 15일까지 선정절차를 완료한다.
- 사정위원회 : 사정위원회는 부동산 학과 전임교수 회의로 같음한다. 사정위원회는 학생이 제출한 제반 서류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발하되, 유학의 경우 재정증명의 적정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기타

-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의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예외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수회의를 통해 논의해서 결정한다.

부칙

1. 이 시행세칙은 2004년 11월부터 시행한다.
2. 이 시행세칙은 2005년 3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시행세칙은 2006년 3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시행세칙은 2007년 10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시행세칙은 2009년 2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시행세칙은 2011년 2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1. 석사과정 학생은 총 24학점 중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타과 전공 6학점까지 인정)
 2. 박사과정 학생은 총 36학점 중 전공과목을 27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타과 전공 9학점까지 인정)
 3. 이외 동일계열의 타 학과 관련 과목 수강 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8. 이 시행세칙은 2013년 9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시행세칙은 2014년 9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1. 박사과정생의 필수수강과목인 부동산 계량분석I,II에 대한 대체과목 인정 조항을 신설함.
 2. 지도교수의 선정 시기를 첫 학기, 늦어도 두 학기가 경과하기 이전으로 앞당김.
 3. 박사 프로포절을 위한 논문게재 요건을 등재지(부동산도시연구지 게재 1편은 등재지로 인정)이상으로 하고 투고자의 지위를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명확히 함.
 5. 박사 프로포절의 학술발표 요건에 학과 춘/추계 학술세미나 발표를 추가함.
 6. 유학 추천 대상자를 추천시기가 아닌 유학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석사과정 2학기, 박사과정 4학기 이상 수료예정자로 현실화 함.
10. 이 시행세칙은 2018년 8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이 시행세칙은 2022년 3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1. 종합시험과목 선택 시 교수님의 순차적인 은퇴에 따라 시험과목 관련 혼란이 예상되므로,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과목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변경함.
 2. 종합시험 응시 자격을 석사과정은 전공학점 15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전공학점 2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함.
 3. 박사과정 학위논문 청구 Proposal 개최 시기를 개강 2주전이 아닌 개강 전 개최로 변경함.
 4. <부동산도시연구>의 등재지 선정으로, '부동산도시연구원의 학술지 <부동산도시연구>는 1편에 한정하여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조항을 삭제함.
12. 이 시행세칙은 2022년 6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1. 학술지 발표에 적용되는 전국규모의 부동산관련학회의 학술대회의 기준을 KCI 등재 및 등재 후보지를 발간하는 부동산관련학회로 명확히 함.
 2. 박사과정 재학생의 대학원 및 대학의 정규강좌 설강 제한은 현직 전임교원인 경우 제외함.
13. 이 시행세칙은 2023년 5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이 시행세칙은 2023년 12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1. 종합시험과목은 담당교수와 과목을 별도 지정하지 않고 개정 내규의 자격시험 <종합시험> 란으로 통용하며 이에 따라 종합시험과목의 담당교수와 과목을 지정한 부칙을 삭제함.
2. 2024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입학생부터 필수이수 과목인 ‘부동산 계량 분석의 이해’ 교과목명을 ‘부동산 계량 분석 세미나’로 정정함.
3. 전임교수의 강의를 다른 교강사가 강의한 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경우 주임교수, 지도교수, 해당 과목교수와 상의하여 종합시험과목 인정여부를 결정함.
4. 석사과정의 공개세미나(Proposal) 관련 규정을 신설함.
5. 석사과정의 학위논문 대체제도 관련 규정을 신설함.
6.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공개세미나(Proposal) 신청자격을 강화함.
7. 석박사통합과정의 면접 관련 규정을 신설함.